

고성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5. 2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5. 26.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2006. 6. 7.

2.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2005. 11. 15, 고성공룡전시관이 제1종 공룡박물관 등록으로 군립공원과 공룡박물관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기타 비효율적인 요금 사용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에 관한 규정을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에서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변경(안 제3조)

나.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상이한 항목 수정 (안 제5조, 제7조 및 제21조)

다. 군립공원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서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함. (안 제17조)

라. 입장료 등의 면제규정을 입장료 면제로 수정 (안 제18조)

마. 시설사용료 면제규정 추가 신설 (안 제19조)

바.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안 제26조)

사. 비효율적인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효율적으로 개정 및 공룡전시관 관련부분 삭제 (안 별표3)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6-201호(2006. 3.16. ~ 2006. 4. 4.)

- 의견 제출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연공원법 제37조제3항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고성공룡박물관이 2005.11.15일자로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고성군 공룡 전시관 운영에 관한조례로 운영하므로 별표3의 시설사용료 요금표중 공룡 전시관란을 삭제하며 아울러 어린이에 관한 규정을 만7세 이상을 만3세이상으로 변경 하므로서 시설사용료 수입을 증대 하였으며
- 나. 시설사용료 감면조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및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이 확대 되었으며
- 다. 군립공원내 무속행위로 인한 쓰레기방치와 음주,가무행위등 무질서를 없애고 건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립공원내 금지행위를 설정하였으며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6.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